

해외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과 한국 사회에의 함의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후 16:30 ~ 18: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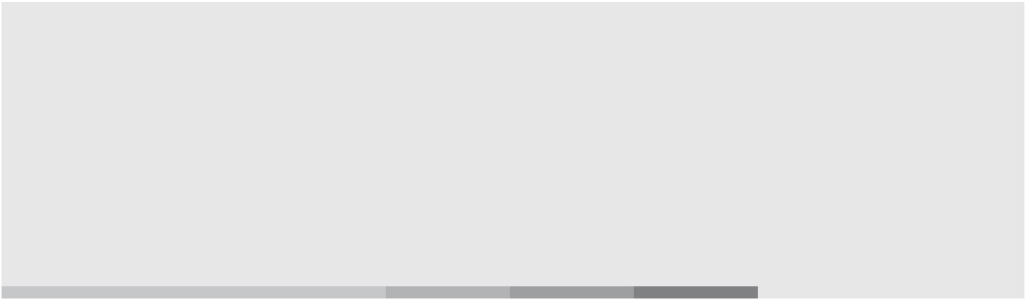
[세부일정]

**- 해외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과
한국 사회에의 함의 -**

시간	내 용	비 고
16:30 ~ 16:40	등 록	
16:40 ~ 16:5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양계민 연구위원
16:50 ~ 17:00	환영사	이재연 원장
17:00 ~ 17:50	발 표	김도혜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인류학과 박사과정)
17:50 ~ 18: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8:30	폐 회	양계민 연구위원

목 차

 서론	3
 해외 이주민 정책의 특징	4
» 국경관리정책의 특징	4
» 이주민 통합 정책의 특징	7
 이주 청소년 정책 동향	9
» 추진 주체	9
» 정착 지원 정책	12
» 학업 지원 정책	15
»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	28
 한국 이주 청소년 정책에의 시사점	30
 참고문헌	32



⋮

해외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과 한국 사회에의 함의

김도혜



1. 서론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방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이외의 다른 가치의 실현들은 유보되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 준 사회적 ‘결속’이나 ‘단결’은 강조된 반면 이러한 단결을 저해할 수 있을 만한 사회 문화적 ‘다양성’ 보장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를 취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대에 육박하게 된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경직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저변에는 이주 노동자 가정이나 국제결혼 가정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먼저 부각되기 시작한 맥락이 있다. 즉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이들을 돕는 것이 다문화’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 본격적인 다문화 담론의 생산과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오경석, 2007; 김혜순, 2007).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면서 중앙 정부가 다문화와 관련된 담론의 주도권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향성을 띄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화주의에 가까운 다문화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시행하는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규범, 2011). 그 결과 시혜적 의도로 논의되기 시작한 다문화 담론이 실제로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연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담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도혜, 2012).

이러한 문제점은 소위 이주배경 청소년¹⁾에 대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미등록 이주 청소년의 교육권 문제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업부진 문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는 교육권 보장의 문제, 학교 적응의 문제, 왕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응전략들은 한국인으로 포섭 가능한 청소년들을 복지의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추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이주 청소년,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이주 노동자 자녀 등 부처별 정의에 따라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그 결과 흡사한 이주의 경

1) 이주 관련 청소년 정책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이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민경·이수정(2010)의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로 다른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주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직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김도혜, 2012).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경통제 정책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주민 통합 정책이 전혀 분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중앙의 여러 부처가 통합 정책에 관여하면서, 동일한 이주민을 상이한 법률의 이름으로 분류하거나 상이한 이주민을 동일한 정책적 이름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상화와 중복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즉 정착 지원서비스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포괄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들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단순히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대상화, 중복 지원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이주민 정책의 변화추이를 살펴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 통합 정책이 어떻게 긴장관계를 이루며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이주민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역,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2. 해외 이주민 정책의 특징

1) 국경관리정책의 특징

국가별 이민정책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Seol(2005)의 경우 이민자 통합 모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나누고 독일(차별배제), 영국 및 프랑스(동화모형),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최충욱(2009)은 다문화진행 프로세스를 4기로 나누고 각각 도입기, 발전기, 갈등기, 정착기로 분류, 한국과 일본을 1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만을 2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3기로,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를 4기로 분류한 바 있다(신현욱 외, 2012).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국경관리 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이민 정책과 이미 국경을 넘어 정착해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통합 정책을 혼재시켜 생각한 분류에 가깝다. 예를 들어 국경관리 정책을 비교할 때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쉽게(혹은 어렵게) 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반면, 이주민 통합 정책은 이와 별개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국경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국경관리 정책은 “영주권-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서구형 이주 정책, 영주권을 얻을 수 없지만 2세 교육은 받을 수 있는 독일형 이주 정책, 임금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본형 이주 정책” (박병섭, 2009)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임금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난민의 경우에는 최근 법무부 산하 난민과가 생기면서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권리를 줘어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서구형 이주 정책’이 일정 기간의 합법적인 거주가 전제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우선 유럽 연합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국경통제의 공통 원칙을 살펴보면 1) 선별적 이주(고숙련 노동자 우대) 원칙, 2) 인구감소, 노령화 문제의 해결책(즉 인적자원)으로 이주민 인식, 3)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경통제 정책과 합법적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별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유럽의 경우, 각국이 자국의 이민 관련 역사 및 철학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이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의 ‘방향’이 한 곳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및 자국민의 고령화 추세라는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이라는 지역기구의 기조 아래에서 정책을 수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신현옥 외, 2012). 예를 들어 Green(2007)은 영국과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비교한 연구 논문에서 역사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민 정책, 통합 및 시민권 정책, 그리고 난민 정책 면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과거 식민지 역사가 이민 정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이 때문에 1970년대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자유로운(자유방임주의적) 이민정책(식민지 국가 출신 인구의 무제한적 허용)을 펼쳤다. 또한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영국은 기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실용주의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통합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다소간 폐쇄적이고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펼친 것과 대조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종교적 ‘다양성’(Diversity)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영국 국민들과 ‘상호

협조적인 관용' (Mutual tolerance)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이때의 관용은 “개인적 배경(특히 민족적 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반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인종차별금지 원칙에 기본” 을 두고 있다(Green, 2007). 이에 반해 독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이민 국가라 여겨본 적이 없다.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와 같이 노동력에 초점을 둔 이민 정책, 동독과의 통일 이후의 독일계 후손들의 이주 관련 프로그램 등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이주 정책들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970년대 이후로 두 국가 모두 이민자들의 수를 통제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방향은 다소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1) 9.11 사건과 2005년 런던 기차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반테러리즘에 기반을 둔 이민 규제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특히 숙련 노동자)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는 공통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유럽연합 차원의 초국적 이민 정책에 소속 국가들의 정책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모두 유럽 출신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반면, 비유럽 출신의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한 이후, 회원국 사이의 인구 이동과 비회원국에서 공동체 내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유럽 연합 내 이주민 인구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유럽 연합 국가들은 이주민 인구 통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호를 개방한 동유럽 국가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다소간 느슨한 정책을 펼치는 반면, 비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책을 펼쳐 인구를 통제 가능한 수치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신현옥 외, 2012).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의 경우 폐쇄적인 기조에서 기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영국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기조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의 경우 폐쇄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자유 정책으로 바뀌었고 영국의 경우 자유 정책에서 폐쇄적 정책으로 바뀌었지만(즉 방향은 다르지만), 현재 두 국가 모두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시민권 테스트를 규범화하며, 장기적인 통합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슷한 수준의 제약을 부여하는 시민권 정책으로 합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별적 이민자 수용’ 원칙은 프랑스, 독일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 유

럽연합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신현옥 외, 2012).

유럽 연합 내의 기조가 이처럼 국경을 통제하여 고급 인력-유럽 중심의 이주민을 선호한다는 선별적 이민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유럽권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고급 인력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별적인 이민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유럽권 국가들은 처음부터 유럽 이주민들이 건립한 이주 국가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백인이 아닌 자들의 이주를 철저히 배제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6-70년대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기댈 수 없는 노동력의 부족, 고령화 등의 현실에 부딪치자 비백인의 이주도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왔다.

2) 이주민 통합 정책의 특징

이미 국경을 넘어 온 이주민의 사회 통합 방식을 비교해 보면, 유럽 연합 국가들은 ‘통합’ (Integration) 기조 아래 정책을 수렴시키고 있는 편이다. 유럽의 경우, 이때의 통합은 주로 도시 공간 분리의 방지(이주민 거주지의 게토화 방지), 이주민의 교육률 및 취업률 고취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유럽의 전반적인 기조 형성에는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이주민 관련 소요사태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방리유 사태가 빈곤한 이민자들의 낮은 취업률에 있다고 보고, 빈곤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공화주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제도(빈곤한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제도)도 지양해 왔던 프랑스가 빈곤 지역 거주자들, 즉 이민자들에게 직업 훈련의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독일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찾은 것이다(Loch, 2009).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이주민의 사회 통합 정책이 각국의 역사 및 철학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네 국가 모두 소위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오랜 흑인 차별 철폐 운동에서 비롯된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적·인종적 배경 뿐 아니라 어떠한 다른 정체성도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 (Politics of recognition)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퀘벡주 분리 움

직임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류 문화가 아닌 이중의 문화(영어권 캐나다-프랑스권 퀘벡)를 함께 인정하는 적극적인 조치들로 이어졌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역시 주류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다양한 소수 문화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곳 출신의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문화를 전시하는 방식의 다문화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다른 비유럽, 신대륙 국가들에 비해 선주민인 마오리인의 인구 비율과 역할이 높은 국가로서 선주민과 이주민인 영국인들 사이의 오랜 관계 맺음으로부터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이 발전해 온 경우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마치 캐나다처럼 오래전부터 이중 언어(영어-마오리어)와 이중 문화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이 다언어, 다문화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신현옥 외, 2012).

요약하면, 여기서 살펴본 해외 8개국 모두 국경관리에 있어서는 자국의 경제와 노동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와 연관시켜 앞으로도 경직된 국경 통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미 자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통합 정책은 각국이 상정하는 통합된 사회의 모습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 ‘프랑스인’으로 이주민이 수렴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주민-선주민이 공히 뉴질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3. 이주 청소년 정책 동향²⁾

1) 추진 주체

[표 1] 해외 8개국의 이주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국가명	이주정책 추진주체	다문화/ 사회통합 추진주체	청소년정책 추진주체	이주청소년 추진주체
프랑스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협력 발전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협력 발전부	청소년체육부 시도 단위에 청소년종합정보센터(Cidj) 있음	교육부 각 급 학교 이주청소년 종합정보센터
독일	이민, 난민과 통합부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민, 난민과 통합부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산하 국가 망명신청자 지원 서비스국(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	각 지방의 업무로 이관 지역국(Local Authority)	아동청소년 부처 신설(2007. 6): 아동학교가족부 ³⁾	지역국 (Local Authority)
스웨덴	이민청(Migration Board)	이민청 노동시장청		노동시장청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 이민과 시민권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보건복지부 산하아동·가족청 (Children and Family Bureau) +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보건복지부 산하아동·가족청 난민정착국 교육부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부 (Citizenship and Migration Canada)	시민권과 이민부, 인적자원과 기술부	노동부	인적자원과 기술부
호주	이민과 시민권부(DIAC)	이민과 시민권부(DIAC)	교육과학훈련부	
뉴질랜드	이민청 (Migration New Zealand)	노동부, 소수민족청(OEA), 태평양문제부(MPIA), 사회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청년개발부 (Department of Youth Development)	

2) 본 장의 내용은 여성가족위원회 용역 보고서인 “신현옥 외(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중, “IV-2 이주 청소년 정책 동향”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이주 정책 추진 체계는([표 1] 참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중앙 부처가 난민을 포함한 이주 관련 정책 일체를 책임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주민과 관련된 독립된 중앙부처를 설립한 경우인데, 이주민 관련 부처의 설립은 국경을 통제하여 이주민의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관리(Management)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1994년 시민권과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와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로 구성된 ‘다문화주의와 시민권부’ (Department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가 두 개의 독립된 기구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현재 시민권과 이민부는 이주민의 정책을 관장하는 독립된 부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2002년 11월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따라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을 관장하던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을 해체하고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이관하게 되었다(이유진 외, 2007). 8개국의 이주 정책은 국경 통제 정책을 특화시켜 독립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내무부와 국토안전부 산하에서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경 통제의 목적을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영국 제외), 이주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관련 연방 부서가 사회통합 정책도 전체적으로 관장한다. 이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그러한데 이주민의 사회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이민 관련 연방 부서에서 상당부분 관장한다. 스웨덴의 경우도 이민청에서 상당부분 관장하지만 이주민의 ‘빠른 취업을 통한 사회통합’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청 차원에서도 업무가 진행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사회통합에 필요한 업무들을 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가족청(Children and Family Bureau)과 난민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이 이주민 가족과 난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독립된 사회통합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캐나다에서는 시민권과 이민부, 인적자원과 기술부 등의 연방 정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호주 역시 이민과 시민권부에서 담당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인 등 소수

3) 영국은 현 고든 브라운 총리 집권 초기인 2007년 6월에 아동·청소년·대학과 관련된 기존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기술부(DFES)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해 각각 아동학교가족부(DCSF)와 혁신대학기술부(DIUS)로 바꿨다. DCSF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에서 실시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한 곳으로 집중돼 있다. 초·중등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 정책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분석하는 부서, 아동복지·학생안전·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부서도 DCSF 내에 설치돼 있다(국민일보 2010/02/10).

민족·소수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소수민족청(OEA), 태평양문제부(MPIA),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등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정책과 이주 청소년 정책의 경우,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연방 기구가 있는 경우는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도이다. 이주 청소년 정책의 경우 1) 이주민 통합을 관장하는 부서, 2) 청소년 정책 일반을 관장하는 부서, 3) 학교 교육 및 취업 등 평생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주 청소년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는 업무를 하고, 각 지방 정부 및 민간단체 단위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나마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보이는 독일의 경우, 청소년 일반과 이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 Women and Youth: BMFSFJ)와 이민, 난민과 통합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통합 정책 어젠다 및 통합과정은 이민, 난민과 통합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행정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지역에 독립적인 교육부서들이 존재하고 서로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영국의 연방들과는 달리 서로의 의존도나 협력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가 있다. 연방부처는 각 주와 특별행정지역별 교육부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책임을 갖되, 지역에서의 자율권과 독립성은 보장받는다. 각 주와 특별행정지역에는 각기 교육부가 존재하며 여기서 학교교육 및 청소년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관장한다(박선영, 2008). 정부는 이민자의 정착과 안정을 돕기 위해 각 지역에 이민자 자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re: MRC)와 에스닉 위원회(Ethnic Affairs Council)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MRC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재정에 기대지 않고 각 주 정부별로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이주민 난민 지원 단체로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교육(문화, 여가와 스포츠를 포함)과 보건복지는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연방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업무만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육과 훈련이 모두 연방정부의 책임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스웨덴 역시 이민청이 이주 관련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주민 수용과 관련하여 이민청 이외에도, 각 지방 정부(Municipality)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각기 분리되어 있다. 즉 이민청이 법적 지위를 결정짓고 난민의 경우에는 관련된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 정부는 유치원(Preschool) 및 초·중등학교 진학 업무와 사회보장법(Social service law, socialtjänstlagen)에 의거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식이다(Migrationsverket 브로셔).

미국의 이주 난민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데, 연방법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중앙정부가 통합정책을 주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되, 그 실행은 지자체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조혜영, 2011).

2) 정착 지원 정책

정착 지원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이들 국가들이 정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소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이주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탈북 청소년’, ‘난민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해당 청소년이 입국 당시 법적으로 분류된 명칭에 따라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해당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눈 나머지 오히려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양산시킬 우려가 높다. 이런 문제점이 몇 해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대안이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런 제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착지원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이주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유효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따로 지칭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새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학생들을 통칭한다. 그러므로 이들 학생이 난민의 지위에 있는지 이주민의 지위에 있는지 등은 별반 중요한 사실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랑스에 새로이 정착한 학생(Élèves nouvellement arrivés en France: ENAF)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최희재, 2011). 한편, 다문화 청소년(Multicultural youth)이라는 단어는 호주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호주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를 이주 난민 청소년 일반으로 확장

시켜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새로 도착한 청소년’ (Newly arrived you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포괄적으로 적용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즉 일반적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의 경우 이주민과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 짓기 보다는 새로운 곳에 정착한 학령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난민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호주의 정착지원 업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여느 국가들에 비해 중앙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이주 청소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이 주로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주 청소년 초기 정착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반면 호주는 중앙 차원, 즉 이민과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에서 직접 지원하는 초기 정착 프로그램들이 많다. 한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 단계에 있으므로 호주 DIAC의 정착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호주 DIAC는 이주민과 난민의 인정절차 및 정착과정 일체를 관장하는 연방 부처다. 호주에는 4가지 공식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이민계획, 특수자격이민, 인도주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은 가족이민 계획 프로그램과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이다(문경희, 2007). 이 가운데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 청소년을 위해 DIAC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호주 문화 적응 프로그램’ (The Australian Cultural Orientation, AUSCO Program)이 있다. AUSCO 프로그램의 특징은 호주 입국 전에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인데 프로그램은 DIAC에서 관장하지만 실질적인 실행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와 호주 난민 위원회(The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RCOA)⁴⁾의 협조아래 이루어진다(DIAC, 2011).⁵⁾ AUSCO 과정은 성인, 문맹자, 아동, 청소년반으로 나뉘어 5일간 진행된다. 이 가운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5-12세 아이들이 그 대상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13-18세 아이들이 그 대상이다. 이 때 DIAC는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과 DVD, 비디오, 지도, 포스터, 신문, 책 등 부자재들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로 마련된 핸드북을 제공받

4) 호주난민위원회는 난민 지원 기관들의 연합체로 130개 이상, 250명가량의 개인이 회원기관 및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호주난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efugeecouncil.org.au/getinvolved/ausco.html>).

5) 2003년 처음 실시된 이래로 2010년 12월 현재까지 방글라데시, 이집트, 가나, 기니아, 인도, 이란, 요르단, 케냐, 레바논,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루마니아, 콩고 공화국, 시에라리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튀국, 터키, 우간다, 잠비아, 짐바웨에서 3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DIAC Australia's Humanitarian Program Information Paper April 2011).

도록 되어 있다. AUSCO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 호주 정부, 지리, 기후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
- 공항, 비행편 등 호주로의 입국에 필요한 정보 설명
- 호주 공항 도착 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설명
- 호주 문화 적응에 필요한 기본 설명(호주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
- 건강 검진 등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 혜택에 대한 설명
- 영어 교육을 비롯한 학교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
- Centrelink, Job Network를 비롯한 직업 탐색에 필요한 서비스 기관 소개 및 해외 학위 및 자격증 인정 방식에 대한 설명
- 은행, 세금 등 재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
- 하우징 및 공공 교통수단,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 호주 법과 시민권에 대한 설명
- 고문과 트라우마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난민들이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는 ‘재정착 프로그램’ (Resettlement Programs)을 제공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재정착 프로그램으로는 ‘통합된 인도주의 정착 전략’ (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IHSS)이 있다. IHSS는 인도주의적 입국에 따라 호주로 유입된 사람들, 즉 난민들에게 최고 6개월까지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상담 및 임시 숙소와 장기 거주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IHSS는 이민자 정보센터(Migrant Resource Center: MR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민자 가족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멜번의 AMES(성인 다문화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2007년 한 해 동안에 시범적으로 ‘청소년 공동체 가이드’ (Youth Community Guides)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주·난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청소년서비스, 여가활동, 교통, 생활정보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문경희, 2007).

한편, 이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청소년(Multicultural Youth) 기구들이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단위로 설립된 조직인 다문화 청소년 이슈 센터(Centre for Multicultural Youth: CMY)를 꼽을 수 있다. CMY는 지역 자체적으

로 운영되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루어지므로 연방 정부의 이주 청소년 정책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기구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호주 전역에 5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CMY는 주로 15-25세 사이의 이주민 청소년들 가운데(난민 포함) 호주에 입국한 지 7년 이내의 새로 정착하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CMY, 2011). 2011년 현재 새로 도착한 청소년과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숙제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착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호주에 도착한지 5년 미만인 유스 지원서비스(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 NAYSS)
 - 운영 방식: CMY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산은 연방 정부의 가족, 하우징, 커뮤니티 서비스, 선주민 업무(Department of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 대상: 12-21세 청소년들 가운데 호주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적 전환기(transition)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아직 집이 없거나(homeless) 노숙인이 될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 내용: 청소년들이 가족, 직장, 일반 학교, 직업 학교, 커뮤니티 등 가능한 서비스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가족 카운슬링 등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NAYSS 프로그램은 호주 각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호주 전역으로는 12개) 빅토리아 주에서는 각각 멜버른 시 남동쪽과 북서쪽을 관할하는 두 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새로 입국한 이주민 청소년들이 빠른 시기 내에 학교 교육이나 직장에 합류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NAYSS 팀은 청소년의 흥미, 교육 수준, 가족의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혹은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한다. NAYSS의 사례 관리사들은 연간 30명의 청소년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 사례 관리사에게 너무 많은 사례가 몰리게 되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 학업 지원 정책

청소년기의 특성상 학령기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이주 청소년 지원 정책 가운데 학업 지원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주 청소년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해 오는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1) 학교의 배치 2) 언어 교육 및 학업 성취도 향상 3)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이주) 청소년 지원 4) 부모 지원 정책 순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1) 학교의 배치

우선 유럽 연합 국가들은 난민, 이주민 등 새로이 정착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Heckmann, 2008). 첫째, 이주민이나 난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난민, 이주민 청소년의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연합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특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되는 특별학급(프랑스의 경우, 적응반과 같은 임시운영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배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학급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특별학급의 운영으로 최대한 나이와 학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나이에 맞는 학년 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나이 중심의 학교급 배치는 유럽 연합 뿐 아니라 앞서 추진체계를 살펴본 8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에 맞게 배정한다기 보다는 언어 테스트(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나 인지능력 테스트를 거쳐 해당 청소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주민 학생들의 특정 지역 몰림 현상이다. 거주지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도 같은 학교군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들이 같은 민족적·인종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문화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민족적·인종적 분리(segregation)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통합을 막을 뿐 아니라 이주민 밀집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경우, 이들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 역시 이런 이주민 밀집 지역의 빈곤과 높은 실업률이 원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역시 공간적 분리 문제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스톡홀름, 예테보리(Göteborg), 말뫼(Malmö)시는 이주배경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인 동시에 높은 실업률과 높은 사회 복지 의존율,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Johansson · Hammarén, 2011). 프랑스의 경우를 목도해 온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특정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이 이 지역 이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간적 분리 문제가 아직 심각한 문제로까지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첫 번째 문제인 학교급 배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프랑스의 경우, 학부모가 프랑스 이민통합국에 신고하면 자녀 교육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망명지원자들을 위한 안내센터(Centre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 CADA)의 도움으로 학구로 연결된다. 이 단계부터는 각 학구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와 연계 하에 진행되는데, 먼저 각 학구에서는 장학관이나 학구장이 학부모에게 프랑스의 교육체제를 안내책자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자녀 입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한다. 다음 단계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상이한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해야할 나이인 경우 거주지 시청에 신고를 하고 등록증(Certificat d'inscription)을 발급받은 뒤, 배정받은 학교로 가서 신고하고 등록한다. 등록 후에는 학습 프랑스어 능력수준과 기초학력을 테스트 한 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급과 입문반(Les classes d'initiation au français: CLIN) 혹은 통합 보충반(Cours de rattrapage intégrés: CRI)으로 편성된다. 한편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할 나이일 경우, 거주지 시청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 (Centres acadé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VNAV)의 도움으로 바로 학교를 배정 받아 학교에 직접 신고를 하고 등록한다. 등록 후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습 프랑스어 능력 수준과 기초학력을 테스트 한 뒤, 일반학급과 적응반(Classe d'accueil: CLA), 귀국 전 취학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취학아동적응반(Classe d'accueil pour élèves non scolarisés antérieurement: CLA-ENSA), 혹은 임시 안내반(Modules d'accueil temporaire: MAT)으로 편성된다(최희재, 2011). 즉 새로이 입국한 모든 이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수준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및 학급 배정이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학급의 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적응반(CLA-ENSA)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을 따라 가는 데 프랑스어 쓰기 실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과목들(예를 들어 음악, 미술 등)의 경우에는 그들의 학교 적응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취학아동적응반과 적응반(CL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응반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2살의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급에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교과목(수학, 외국어 등)에서는 상당 부분 정규학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학급의 학생들은 보통 최장 1년의 기간을 지난 후에 프랑스어를 충분히 습득하였다고 판단되고, 학교 교칙이나 기능에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판단될 경우 정규학급에 편입하게 된다(이경수, 2011).

영국의 경우 이주 청소년의 학교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지역(웨일즈,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별로, 그리고 각 학교별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주 청소년(특히 난민 청소년)의 학교급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각 지역국(Local Authorities)으로 해당 지역에 배치될 난민 가족의 정보가 넘어오게 되면, 지역국은 이들이 머물 집과 아동이 배치될 학교를 알아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난민 아동의 학교 배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동의 나이를 중심으로 배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아동의 정확한 나이 기록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난민 아동 배치를 부탁받은 학교들이 이들 학생의 학업 부진 가능성을 핑계로 난민 아동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때문에 아동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의 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있다(Manyena · Brady, 2006). 아동의 학교 배치에 있어, 지역국과 지역국 산하의 망명신청자 지원팀(Asylum Seeker Support Team, ASST)이 해당 학교와 직접 협상을 한다. 나이와 함께 중요한 기준은 영어 실력 보다는 일반적인 ‘인지능력’ (Cognitive ability)이다. 즉 영어실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도 이를 가지고만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그림이나 수식을 통한 인지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학교급 배치에 기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캐나다 이주 청소년의 학교 배치를 비롯한 학교 사회로의 적응 문제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유럽 연합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학교급 배치를 둘러싼 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에는 이주 난민 청소년의 출신국가 별로 이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학교들이 생겨 이들을 ‘분리’ 교육시켰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랜드 가톨릭 학교를 건설하였으며, 흑인 아동들을 위해서는 분리된 학교를 세우는 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립 학교에서는 주로 빠른 기간 내에 주류 앵글로색슨 영어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국의 언어와 문화는 철저히 배제(Subtract)하고 영국권의 문화와 언어로 대체하는(Replace)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시절에는 이주 청소년의 학교 배치를 철저히 그들의 ‘영어 실력’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주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어 공부하였다. 또한 제 2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ESL)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아동들은 낮은 학년에 배치되어 정규 학교 수업만으로 영어 실력을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70년대 들어 동화주의에 기반 한 이러한 분리교육이 주류사회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일자 일반 정규 학교에서 이주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ESL 수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이주 청소년의 일반 정규 학교 수업을 보조해 주기 시작했다. 또한 이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어나 영어 실력을 토대로 학교급을 배정받지 않게 되었다(Durán, 1990).

요약하면 유럽 각국과 캐나다 등은 나이에 맞는 학교급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국가별로 이주 청소년의 인지능력이나 목적국가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여 학교급 배정에 도움을 받는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프랑스어 혹은 독일어) 프로그램이 나이에 맞는 배치 이후 부족한 학습 능력을 단기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조해 줄 것이라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한국이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의 중요성이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 월등히 강조되며, 대학 진학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나이대가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접어들어 있다면,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업 성취도를 단기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외 사례에서처럼 대원칙(예를 들어 나이에 맞는 배치)을 세워놓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어떤 시험을 통해 나이에 따른 배치의 예외 사항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2) 언어 교육 및 학업 성취도 향상

앞서 살펴본 대로, 이주 청소년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학교와 학급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학업 수준이 미달되는 경우 이를 지원해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목적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주 청소년의 경우 언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영어 실력이 해당 학교급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학급에 배치하여 교육하는 것이 ‘배제’(Exclusion)를 낳아 장기적으로 주류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빨리 주류사회의 문화와 영어를 습득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일반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보충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 수업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기 ‘전’, 4-6주 간 특별 영어수업(English as Additional Language: EAL)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특별 영어수업 시간이 끝날 때 국가 공인 커리큘럼 체크리스트(National curriculum checklist)를 가지고 아동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게 되고 아동

에게 부족한 영역의 영어 실력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 발달 과정을 체크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새로 이주한 청소년의 학업 따라잡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주 2,3세대 청소년의 학교 사회로의 통합을 더욱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독일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가 된 ‘통합’ 정책에서 이주 청소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 청소년에 비해 2, 3세대 이주 청소년의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취업률이 주요한 이유로 손꼽힌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통합 어젠다는 크게 ‘조기 언어교육’ 과 ‘내국인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성취율 및 취업률 달성’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의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아젠다 및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육 지원을 통한 ‘조기 언어 교육’

- 이주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기 독일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초를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은 이주배경 유아(1-3세)가 ‘공공 보육시설’ 을 이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독에 비해 서독은 수요에 비해 공공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였는데(동 독일 지역의 경우 수요 대비 44%의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반면 서 독일 지역은 9.9%에 불과하였다; Bürgin, 2010),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는 2008년까지 서 독일 지역의 경우 72%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주민 가족들만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 보육시설 보급률 증진을 통해 이주민 가족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독일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채용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주민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때도 이주민 가정에게만 특별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이수정 · 김도혜, 2008).

다음으로 이주 청소년의 모국어 교육을 비롯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적 기초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다문화주의 기초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이중 언어에 대한 규정이 자유로운 편이다. 우선 스웨덴 이주 청소년

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7-16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1-9학년(7-16세)까지의 의무교육 기간과 5-7세 사이의 유치원(pre-school) 교육 기간 동안 스웨덴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모국어 교육을 학교에 신청, 수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⁶⁾ 모국어 교육을 정규 교육 시간 내에 할 것인지 방과 후 교육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각 학교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수업이 마련되어 있어 이주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한 청소년의 경우도 각 지방 정부의 책임 하에 적합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망명 혹은 난민 신청 청소년은 입국 직후 스웨덴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교육을 원한다면 각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청소년의 모국어로 수업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Swedish Immigration Board, 2010).

한편, 다문화주의 기조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중언어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최근 그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선정되어 있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이중 언어 사용 촉진에서 영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No Child Left Behind(NCLB) 정책에 따라 전체 학령기 아동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이로미·장서영, 2010; 조혜영, 2010). NCLB 법안은 학교별 학업 성취도를 ‘매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 청소년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하루 빨리 영어를 습득하여 학업 성취도를 미국 태생 청소년들과 흡사하게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이중 언어 정책의 경우 캐나다는 퀘벡 문제와 맞물려 애초에 영어-프랑스 공용어 사용을 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중 언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즉 영어-프랑스어 공용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소수민족 언어의 보존 및 사용으로까지 그 논의의 수준이 확대되어 갔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계 퀘벡인의 분리 독립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 정부는 1963년에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관한 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이하 B&B위원회)를 설립하고, 프랑스어를 영어와 함께 캐나다 연방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다. 이 때 퀘벡주만을 특이 케이스로 다룬 것이 아니라 캐나다 내 모든 주가 이중 언어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랑스어 뿐 아니라 소수 언어도 포함시키는 전략을 선택

6) 물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모국어 수업이 개설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은 적어도 5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야 하며 해당 모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학교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Westin, 2003).

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소수민족들이 1) 자신의 모국어와 2) 영어 혹은 프랑스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강휘원, 2009)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았던 이주 청소년이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언어적 정의(justice)를 실현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았다.

강휘원(2009)은 이를 두고 “민족(종족)모델(Ethnic model)로 설명되는 사회에서 시민모델(Civic model)” (강휘원, 2009) 사회로의 발전을 전제로 새로운 언어 정책의 틀을 마련해 나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형성된 민족 집단 모델이 민족이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민모델은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시민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시민이 되며 이들 시민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모델에서 법적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그들의 모국어를 포함)는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캐나다는 현재 시민모델 사회로 발전을 거듭하여 동일한 언어나 인종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의미에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난 25년간 입국 이민자들의 모국어가 영어 혹은 프랑스어가 아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에서도 캐나다는 이런 이중 언어 교육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1981년의 경우 전체 이민자 가운데 52%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 혹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이민자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81년의 36.2%에서 91년 20.6%, 2001년의 14.3%, 2006년에는 13.3%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한다는 이민자들의 수는 더욱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81년의 4.6%에서 2006년에는 3.9%를 차지했다(캐나다 공식 언어 위원회 홈페이지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

캐나다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이중 언어 촉진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는 개별 주가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교육의 교육기간도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소수언어를 포함한 이중 언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크게 1) 공용어(영어 혹은 프랑스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2) (이민자의) 모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어와 프랑스간의 교육으로 언어몰입교육(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들 수 있다. 실례로, 프랑스어 몰입 교육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녀들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집중적으로 프랑스어로 교육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다문화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영어 혹은 프랑스어 가운데 하나의 공식 언어 모두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로 ‘이민자 소수언어 교육’ (immigrant minority language instruction)과 ‘소수민족 모국어교육’ (Heritage Language Program)을 들 수 있다(강희원, 2009).

(3)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이주) 청소년 지원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이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주 청소년들 가운데 위기 청소년을 골라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일반(혹은 학령기 일반) 가운데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전환기 프로그램’ - 학교에서 학교로, 혹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 to school or school to work transition) -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사회 통합 방법으로 학교로의 진학 뿐 아니라 직업 훈련 등 진로 탐색의 계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프랑스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화국주의에 기반을 둔 평등 의식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주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을 따로 실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 다문화주의를 모토로 삼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일반적인 형태의 교육 지원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책을 위기 청소년 정책이라 한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프랑스의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은 방리유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 즉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빈곤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계토화 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이주 청소년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이주 청소년들이 빈곤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프랑스 국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교육투자 우선지역’ (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설정하여 특정 지역의 계토화를 막고 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주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ZEP는 1960년대 미국의 ‘보상 프로그램’ (Compensation programme)과 영국의 ‘교육 활동지역’ (Educational action zone)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81년 탄생한 정책이다. 대

상이 되는 학교는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 임금’ (Revenu minimum d’insertion: Minimum income for social integration: RMI)을 정부로부터 받는 학부모의 비율과 비-프랑스어 사용 학생의 비율을 감안하여 선정되며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학교 네트워크는 연간 1,000명의 교사와 3,000명의 조교 교사들을 더 배정받게 된다(Zay, 2009).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의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통합’ (Youth integration) 정책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즉 연방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을 ‘청소년 통합’으로 잡고, 그에 맞는 4가지 중요 프로그램을 제안,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 주체(주로 시민단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2년 현재 ‘청소년의 힘’ (Youth strengths)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통합 정책 아래 4가지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여기에는 ①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② 청소년의 힘: 지역에서부터의 활동 프로그램, ③ 이주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Youth migration service), ④ 기술 소개소 프로그램(Competence Agencies)이 포함된다(독일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 홈페이지).⁷⁾ 여기서는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Truancy-The second chance)
 - 배경: 이주 청소년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평균적으로 매해 8퍼센트의 학생들이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며 그 중 상당수가 장기간 무단결석하거나, 출석은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수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또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직업 훈련 과정에서도 낙오하며 20에서 29세 사이 청소년의 15퍼센트는 아예 아무런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도한다. 학력미달과 직업 훈련 부족은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이며 이것이 향후 소요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2배나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 기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 지원
 - 목표: 2015년까지 학업중단 비율을 2007년 현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기 위함
 - 대상: 반복적으로 장기간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학업 거부 학생들 특히 하우트슐레(Hauptschule)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주목함(이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나 하우트슐레 과정의 대다수가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7) ③이주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Youth migration service)은 정착지원 정책 부문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x 페이지 참조), ② 청소년의 힘: 지역에서부터의 활동 프로그램, ④기술 소개소 프로그램(Competence Agencies)은 취업지원 정책 부문에서 소개된다(x 페이지 참조).

이며, 특히 이주배경의 12-14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험군으로 분류, 특별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음).

- 지원방법: 2006년부터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191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학업을 거부하는 학생과 그 부모, 교사를 위한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각 단체에 있는 학업중도 포기자를 위한 사례별 관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집중적/개인적으로 이들을 돌보도록 한다. 이 때 관리자는 청소년과 함께 정규학교 혹은 직업학교 재편입 계획을 세우고, 계획 실행의 성취도를 점검하며 (학생들로부터) 시달리기 쉬운 부모와 교사들을 대신해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zweitechance.eu>).

뉴질랜드 역시 이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위기 청소년 대책 프로그램은 없고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를 중심으로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자원 제공 계획’ (Ongoing Resourcing Scheme: ORS)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새로 개편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이유에서든(장애 포함)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ORS 대상 학생으로 지정되면 학생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속적인 자원 제공 계획(Ongoing Resourcing Scheme: ORS)
 - 대상: 장애를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내용: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한 명의 담당교사가 더 배정되며, 스피치 교사, 심리상담사, 장애 담당 교사 등의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이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사례가 특이하게 부각될 수 있다. 미국은 여느 국가들과 달리 이주 청소년만을 특화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초·중등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산하 이주교육부(Office of Migrant Education: OME)에서 운영 중인 이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로 인해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청소년’ 들을 지원한다(미국 교육부 홈페이지)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주민 청소년(Migrant youth)과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미국 초·중등교육국에서 말하는 이주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인 관계로 나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 중 다수는 제3국에서 생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계속 이사를 다녀 그 자녀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학교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이주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이수정·김도혜, 2008).

- 이주민 청소년을 위한 핫라인(Migrant Youth Hotline)
 - OME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ESCORT라는 민간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주로 이주청소년들 개인에 맞는 학교를 찾아주거나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 이주민 청소년 학교정보 교환 프로그램(Migrant Student School Record Exchange Initiative)
 - 부모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여러 주를 옮겨 다니며 동시에 다수의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이주민 청소년들의 학교 및 건강 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들의 정보를 (정부에서 공인한) 학교 및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이주민 학생 정보교환 (Migrant Student Information Exchange: MSIX)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이주민 청소년으로 인식된 학생들의 정보를 기록하여 이들이 또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그 이전의 학교 및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이주민 청소년 확인 및 모집 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Identification and Recruitment Initiative)
 - 이주민 청소년 학교정보 교환 프로그램에 이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의 담당 교육 실행자(State educational agencies)가 이주민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identification), 청소년 및 이들의 부모에게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혜택을 알리며,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 이주민교육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Program)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recruitment)이다. 이를 위해 ‘이주교육정보센터’ (Migrant Education Resource Center: MERC)를 운영한다. 이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국 전역에서 이주민 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들의 연락처들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OME 홈페이지).

(4) 학부모 지원 서비스

넓게 보아, 이주민 1세대를 위한 언어 교육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지원 서비스임에 분명하다.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는 해외 8개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부모’가 새로 정착한 이주민일 경우 이루어지는 언어 이외의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주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 학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들 학부모들 역시 이민 1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주류사회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 때문에 몇몇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 재학 중인 이주 아동 학부모를 위한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비영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 수업)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부모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학교들도 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생들을 받기 전에 해당 이주 학생들이 지역국의 도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Manyena · Brady, 2006).

호주의 경우 각 지역별 이주민 정보 센터(Migrant Resource Center, MRC)에서 다양한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는데, 주로 이민 1세대인 학부모의 호주 교육 시스템 및 문화 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 빅토리아 주에 위치한 Spectrum Migrant Resource Center(SMRC)에서는 빅토리아 주 정부와 관련 지역 기구들, 그리고 자체 기금 마련을 통해 새로 정착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주민 자녀와 관련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SMRC, 2009).

- 새로운 문화에서 자녀 키우기(Parenting in a New Culture, PINC)
 - 배경: 2002년 도입된 사업으로 호주에 어떤 네트워크도 가지지 못한 이주민일 경우 양육(Parenting)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목적: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 학부모에게 호주에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내용: 학부모의 모국어로 만들어진 ‘양육 가이드북’ (Bilingual parenting guidebooks)을 만들고 이주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정보,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한다. 2009년 현재 중서 아프리카 출신 학부모를 위한 책자를 준비 중이다. 책자 뿐 아니라 MRC 직원들이 해당 이주민 커뮤니티로 찾아가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 오프라인을 통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 새로운 호주 친구(My New Aussie Mate) 만들기
 - 배경: 이주민 가족에게 호주의 언어·문화·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대상: 친구 만들기를 원하는 이주민 가족과 호주 태생 가족을 맺어주는 결연 프로그램으로 주로 새로 정착한 이주민 가족을 연결시켜 준다(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 우선순위).
 - 내용: 새로 이주한 이주민 가족의 경우 환경과 문화가 낯설어 피크닉과 같은 바깥 활동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결연을 맺은 호주 가정과 같이 외부활동을 주로 즐기도록 한다. 이렇게 선정된 가정(이주민, 호주 가정 모두)에게 각각 매달 60 호주 달러(한화 약 7만 원가량)가 지원된다.

4)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

해외의 다문화 교육을 논하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주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계와 언론, 정부 기관 등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주자,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때가 많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이주자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먼저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던 선주민을 위한 교육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이라는 거시 목표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뿐 아니라 선주민의 의식제고를 통한 다문화 환경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이러한 다수자의 위한 다문화 교육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이해하는 목적에서부터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가 높이 평가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여러 주제의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이념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반적 방향성은 크게 “다양성으로의 개방, 기회 균등과 평등, 사회적 통합”이라는 3가지 문제로 집약하고 있다(이민경, 2007). 인종, 민족 등의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어떠한 사회 경제적 취약성 하에서도 배제되거나 편견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간 교육, 반 인종주의 교육, 세계화 교육, 평화교육, 민주화교육, 시민교육, 인권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 또한 다양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의 형태로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내용이라는 취지아래 프랑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편견적 혹은 차별적 관행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상호문화교육’ (Interkulturelle Erziehung bzw.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에는 2가지 흐름이 있는데 만남의 교육과 갈등의 교육이라는 흐름으로 집약된다. 전자가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문화적 풍요를 지지하는” 쪽이라면 “후자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극복, 기회균등 구조 창출 등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의 극복에 주 관심을 두” 는 것이다(Köttters-König, 2006; 김상무, 2010, 재인용).

한편 미국과 영국적 전통을 가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인종에 중점을 둔 반인종주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흑인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인종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예를 들어 적극적 차별 정책; 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해 인종차별의 뿌리를 근절하려 해 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다문화 교육의 형태로만 반인종주의 정책을 한정지을 수 없다. 호주의 경우에는 동화주의 정책을 펼치던 70년대 초반까지 이주자 및 그 자녀들을 ‘결핍된’ 존재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의 호주 입국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호주 사회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대되자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호주는 영국에 비해 인종주의 철폐를 국가적인 어젠다로 삼지는 않아왔으나,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등 새로운 이민자 그룹의 등장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 관행이 문제가 되자 인종주의 철폐를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있다. 즉 이주의 배경이 있는 학생들(청소년) 뿐 아니라 이주자 출신인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동료들로부터 인종차별적 관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Lee, 2012) 이것이 단순히 학생들 간, 학생-교사 간 문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학교 사회, 더 나아가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호주 학교에는 반인종차별 담당직원이 파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종차별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속하고 있다(Ramsey & Williams, 2003; 최충옥, 2009, 재인용).

4. 한국 이주 청소년 정책에서의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이주 청소년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밝히기에 앞서 한국이 여기서 살펴본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짧은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국가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를 고민해 온 경우이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친 이주와 반 이주 정책들을 오가며 오랜 기간 동안 이주의 의미와 이주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해 온 경우이다. 즉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이주민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성찰적 고민들을 오랜 기간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국이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에 걸맞은 사회 통합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오랜 기간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이제 막 이주민 등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성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이주 역사에 따라 서로 상이한 철학적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그 가치에 맞는 이주 정책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주민 및 이주 청소년을 보는 관점 혹은 시선이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 뒤 적용 가능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이주 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이주민을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보기 보다는 이주민의 한국 입국 시의 ‘법적 지위’ 혹은 ‘정책적 이름’에 따라 ‘결혼이주민’, ‘탈북자’, ‘난민’ 등의 이름으로 상이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법적 용어로 이들의 신분을 한정지음으로써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형화의 문제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흡사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현저히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제된 선주민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을 보듬어 안기 위해 마련된 지원정책들을 전면 축소해야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이주 정책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

하고 소수자 정책을 좀 더 큰 틀 안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신현옥 외, 2012).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 나타나는 포괄적 개념(새로 도착한 청소년)을 거울삼아 한국 실정에 맞는 개념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 교육의 경우는 그 개념 자체가 한국과 외국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 교육이 소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상자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다수자를 위한 반편견, 시민사회 교육으로 확대 해석된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양성 평등 교육, 통일 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흡사한 교육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여러 가지 다른 카테고리 나뉘어서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민주시민의식 고양이나 반편견 반차별 의식 제고 등 포괄적인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시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시켜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 청소년을 논하는 데 있어 이주 청소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이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미국 텍사스의 경우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어린이 자신의 선택하지 않은 지위(status)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책임지지 않는’ 원칙이 마련된 바 있다. 즉 청소년이 선택한 것이 아닌 지위에 대해서 알가알부하기보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청소년이 어떠한 편견과 부당한 처사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급 배치와 관련하여 나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학업 성적(주로 한국어 실력)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절충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한국만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의 사례는 대개 나이를 중심으로 배치되지만 한국의 높은 학구열을 고려해볼 때 나이로만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 및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이주 청소년 프로그램과 같이 부모가 처한 상황 때문에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 청소년의 정보를 관련 학교 및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수 있다. 부모지원 서비스의 경우, 호주와 같은 양육 가이드 프로그램이나 결연 부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은 한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봄직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결연 부모를 만들어 서로간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장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⁸⁾

- 장진숙 (2010).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3), 97-128.
- 강휘원 (2009).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23(3), 193-222.
- 김기홍 (1996). 캐나다의 이민사와 이민정책. **북미연구**, 3(1), 5-46.
- 김도혜 (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1-29.
- 김미성 (2010).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이후 문화정책 재조명: 다문화주의 도입의 범위와 한계. **불어불문학연구**, 82, 423-451.
- 김상무 (2010).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정책이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24(3), 65~89.
- 김성수·박치완 (2008). 영국의 다문화성향과 다문화주의. **EU연구**, 23, 65-88.
- 김효신 (2009).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 해외정책사례 캐나다편**.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희경 (2008). EU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찰. **국제이해교육연구**, 3(2), 5-30.
- 노정옥 (2011).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희 (2007).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 해외정책사례 호주편**.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병섭 (2009).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와 철학**, 18, 291- 356.
- 박선영 (2006). 영국의 시민교육과 다문화주의. **미래청소년학회지**, 3(1), 41-68.
- 박선영 (2008). 영국 아일랜드 호주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고찰: 주체, 입법현황,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43-259.
- 박선희 (2010).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논총**, 50(2), 193-211.
- 송창주 (2009).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 해외정책사례 뉴질랜드편**.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신현옥·윤상석·이슬기·김도혜·이향규·오수연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8) 본 글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으나 참조한 모든 문헌들을 기입하였다(참고용).

- 온대원 (2010).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26, 239-267.
- 윤선영 (2006).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 해외정책사례 독일편**.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경수 (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 751-776.
- 이규영 · 김경미 (2010).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國際政治口叢**50(1), 445-468.
- 이로미 · 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민경 (2007). **다문화 청소년 알아가기 - 해외정책사례 프랑스편**.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수정 · 김도혜 (2009). **해외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서의 합의**. 무지개청소년센터 미발간 자료.
- 이용승 (2003).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진 · 이유진 · 김영란 · 이기범 · 문지영 · 최동주 · 박채복 · 강주현 (2007).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법무부.
- 이종열 (2008). 다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미국사례.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5), 51-65.
- 장한업 (2010). 프랑스와 한국의 이민자 자녀 교육정책 비교연구. **불어불문학연구** 83, 891-925.
- 전경옥 · 이유진 · 김영란 · 유숙란 · 금혜성 (2010). **주요 선진국 다문화정책의 시민사회 공존 사례 연구**. 특임장관실 연구용역 보고서.
- 정희라 (2007a). 자유방임 이민국'에서 '제로(Zero) 이민국'으로: 영국 이민사 개관 및 연구 동향. **서양사론**, 93, 247-270.
- 정희라 (2007b).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통합. **이화사학연구**, 35, 1-27.
- 조혜영 (2011). 미국의 이주 아동 청소년 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1), 1-25.
- 최연혁 (2009). **스웨덴 이주 · 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최은록 (2010). **프랑스 방리유(banlieues)지역 소요사건(2005)의 원인과 특징 분석: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종렬 (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 비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충욱 (2009).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9(2), 175-191.
- 최희재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방안 모색: 프랑스의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75, 45-64.
- 하세정 (2010). 영국의 이민총원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국제노동브리프*, 7월호, 57-63.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Lee, J. (2012).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in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통합교육과정연구*, 6(1), 215-242.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11). *Australia's Humanitarian Program Information Paper*.
- Durán, M. (1990).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Education of Refugee Children. *Refuge*, 10(2), 10-13.
- EACEA P9 Eurydice (2009). *Integrating Immigrant Children into School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 Faist, T. (1995). Ethnicization and racialization of welfare-state politics in Germany and the USA. *Ethnic and Racial Studies*, 18(2), 219-250.
- Green, S. (2007). Divergent Traditions, Converging Responses: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the UK and Germany. *German Politics*, 16(1), 95-115.
- Hampshire county council (2009). *Asylum seekers and refugee children/young people in education Good practice guidelines*. Hampshire: Hampshire County Council.
- Heckmann, F. (2008). *Education and migration: Strategies for integrating migrant children in European schools and societies (An independent report submitted to the European Commission by the NESSE network of experts)*. European Commission.

- Jayasuriya, L. (2008). Australian Multiculturalism Reframed. *The Newcritic*, 8, 1–5.
- Johansson, T. & Nils, H. (2011). The art of choosing the right tram: Schooling, segregation and youth culture. *Acta Sociologica*, 54(1), 45–59.
- Joppke, C. (2007). Transforma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Civic Integr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World Politics*, 59(2), 43–273.
- Koopmans, R. (2010). Trade–Offs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 Immigrant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 1–26.
- Loch, D. (2009). Immigrant Youth and Urban Riots: A Comparison of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5), 791–814.
- Manyena, S. B. & Eileen, B. (2006). *Supporting asylum seeker and refugee children within the education system in England*. Berkshire: CfBT Education Trust.
- Mushaben, J. M. (2010). From Auslander to inlander: The Changing Faces of Citizenship in Post–Wall Germany. *German Politics and Society*, 28(1), 141–164.
-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1) *2010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US homeland security.
- Oltmer, J. (2006). The Unspoiled Nature of German Ethnicity: Immigration and Integration of “Ethnic Germans” in the German Empire and the Weimar Republic. *Nationalities Papers*, 34(4), 429–446.
- Potocky–tripodi, M. (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Rincon, A. (2008). *Undocumented Immigrants and Higher Education: Si Se Puede! (The New Americans: Recent Immigration and American Society)*,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Seol, D. (2005).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Society*, 34(1), 75–124.

- Singham, M. (2006). Multiculturalism in New Zealand - the need for a new paradigm. *Aotearoa Ethnic Network Journal*, 1(1), 33-37.
- UNHCR (2012). *2011 Asylum Levels and Trend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Statistical overview of asylum applications lodged in Europe and selected non-European countries*. Geneva: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Westin, C. (2003). Young People of Migrant Origin in Swed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4), 987-1010.
- Wiesbrock, A. (2011).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Sweden: a Model for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igration*, 49(4), 48-66.
- Zay, D. (2009). Inclusion and education in European countries: Final report: 4. Franc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 <http://www.docabureaus.nl/INTMEAS.html>.

인터넷 자료

- Bedford, Richard (2003). New Zealand: The Politicization of Immigration. Country Profile.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86>
- Büchner, Antje-christin & Kimberly Garner (2003). Denied a future?: Unaccompanied Minor Refugees
http://www.humanityinaction.org/docs/Buchner_Garner_2003.pdf
- Centre for Multicultural Youth (CMY). Annual Report 2010-2011.
<http://www.cmy.net.au/Assets/1840/1/CMYAR2010-11web.pdf>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해외정책동향-캐나다
http://www.nypi.re.kr/bbs/viewbody.np?code=abroad_trend&page=2&id=40&numbe

r=40&keyfield=&keyword=&category=&BoardType=&admin=

Friends of the earth (2002). Beginners Guide to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http://www.schoolswbdirectory.co.uk/localauthorities.php>

Spectrum Migrant Resource Centre (2009). 25th Anniversary publication.
<http://www.spectrumvic.org.au/About-us/Media-Publications/SMRC-25-Anniversary-Publication>

위키백과 “방리유 소요사태” 검색

CIA World Factbook. Germany.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m.html>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http://www.mipex.eu/>

프랑스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협력 발전부. L'immigration, l'intégration, l'asile et le développement solidaire
<http://www.immigration.gouv.fr/>

영국 국가 망명신청자 지원 서비스국(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 NASS)
<http://www.ukba.homeoffice.gov.uk/asylum/support>

영국 통계청 UK National Statistics Publication Hub
<http://www.statistics.gov.uk>

호주 통계청

National Migrant Statistics Unit(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home?opendocument>

호주 이민과 시민권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http://www.immi.gov.au>

호주난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efugeecouncil.org.au/getinvolved/ausco.html>

스웨덴 이민청 <http://www.migrationsverket.se>

스웨덴 이민청(Migrationsverket). Brochure: How to apply for asylum for children with parents.
http://www.migrationsverket.se/download/18.c67332b12fedcf5c3280007766/barnifamilj_en.pdf

The Swedish Resettlement Programme 2008
<http://www.fluechtlingshilfe.ch/asylrecht/asylsymposium/bisherige-symposien/swedish-resettlement-programme-1.pdf>

독일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www.bmfsfj.de

독일 이민, 난민과 통합부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www.bamf.de

독일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zweitechance.eu>

독일 청소년의 힘: 지역에서부터의 활동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aktiv-in-der-region.jugend-staerken.de>

캐나다 공식 언어 위원회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

<http://www12.statcan.ca/census-recensement/2006/as-sa/97-557/figures/c3-eng.cfm>

캐나다 이민과 시민권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ttp://www.cic.gc.ca/english>

캐나다 국가이민통계부(National Migrant Statistics Unit, NMSU)

뉴질랜드 이민청 Immigration New Zealand.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aboutnzs/>

미 교육부 Office of Migrant Education (OME)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ese/ome/index.html>

국민일보, 교육, 희망을 말하다-3부 대안 ⑤ 부처별 난립 업무 통합해야. 2010년 2월 10
일자 기사.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